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2명)하고,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며,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조정실(1명), 청년정책협력관(1명) 및 청년정책조정실 1개과(3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대테러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중 “충원하며,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를 “충원한다”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91”을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88”을 “28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80”을 “79”로, 행정주사 “12”를 “1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91”을 “289”로 하고, 일반직 계 “288”을 “28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80”을 “79”로, 행정주사 “13”을 “1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23”을 “122”로 하고, 일반직 계 “123”을 “122”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 “3”을 “5”로,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 “6”을 “3”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23”을 “122”로 하고, 일반직 계 “123”을 “122”로 하며,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 “2”를 “4”로,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 “5”를 “2”로 한다.

별표 2의3 중 총계 “35”를 “34”로 하고, 일반직 계 “25”를 “2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

무관 “12”를 “11”로 한다.

별표 2의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무조정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청년정책조정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청년정책협력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청년정책조정실 1개 과	3명 (4급 1명, 5급 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4) 경제조정실 1개 과	4명 (4급 1명, 5급 3명)	2024년 9월 30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조정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 략)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27명(3·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0명, 6급 3명,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4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u>충원하며,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⑤ ----- ----- ----- ----- ----- ----- ----- <u>충원한다.</u>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91	289	-2
일반직 계	288	286	-2
행정사무관	80	79	-1
행정주사	12	11	-1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91</u>	• <u>289</u>	-2
일반직 계	• • <u>288</u>	• • <u>286</u>	-2
행정사무관	• • <u>80</u>	• • <u>79</u>	-1
행정주사	• • <u>13</u>	• • <u>12</u>	-1
•	•	•	
•	•	•	

[별표 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3	122	-1
일반직 계	123	122	-1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3	5	+2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6	3	-3

[별표 2의2]

조세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3	122	-1
일반직 계	123	122	-1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2	4	+2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5	2	-3

[별표 2의3]

대테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5</u>	• <u>34</u>	-1
일반직 계	<u>25</u>	<u>24</u>	-1
•	•	•	
•	•	•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u>12</u>	<u>11</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6